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안 제5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규정(안 제6조)

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안 제7조)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주차장법」 제2조, 제7조, 제12조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들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점차 확대·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